

'쇠고기 이력추적제' 6월 22일 실시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하나

이력사업본부 이력관리팀장 정진형



5월은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면사업 착수에 연착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하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동 제도를 잘 알고 있거나,

본 사업이 시작되면 처음으로 동 업무를 해야 하는 분뿐 동, 사업 참여자들이 여러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 동 사업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력추적제 단계별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무엇을 사전 준비해야 하는 지를 알아본다.

쇠고기 이력추적제도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기록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'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'

의 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제도이다.

동 제도는 2004년 10월,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본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 점검했으며, 2008년 12월 22일 사육단계를 시작으로, 오는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 본 사업이 시작된다.

1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① 소

▶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소(한우, 육우, 젖소 등)는 이력추적제 대상입니다.

② 쇠고기

▶ 개체식별대장(이력추적시스템)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축처리하여 얻은 쇠고기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쇠고기(지육, 정육, 포장육)는 해당되며, 뼈,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됩니다.

2 사육단계(축산농가 등)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① 소의 귀표는 정부에서 배부한 것을 부착하고, 출생 등의 신고를 통해 전산등록이 완료된 소만이 6월 22일부터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이 가능합니다.

▶ 농가 등에서 자체 부착한 귀표나 관리번호가 없는 민 이표는 도축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정부에서 배부한 귀표를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.

- ②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, 샀을 경우에는 위탁기관(관할지역 축협 등)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- ▶ 한우뿐만 아니라 젃소, 육우도 신고해야 합니다.
 - ▶ 우시장에서 소를 거래한 후에도 반드시 위탁기관에 서면·전화 등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.
- ③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출하 할 경우에 미리 휴대폰을 이용하면, 해당 소가 전산 등록되어 있는지, 이동경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
 - ▶ 소의 귀표에 대한 조회결과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축이 금지됩니다.

3 도축단계에서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① 귀표가 부착되었는지, 부착된 귀표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해야 합니다.
 - ▶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또는 훼손되어 알 수 없거나,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축해서는 안 되며, 해당 작업장의 위생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②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신고내용과 도축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이력추적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.
 - ▶ 도축업영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와 도축결과,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,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결과를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.
- ③ 소가 도축된 이후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출력하여 개체별로 구분하여 지육에 부착해야 합니다.
 - ▶ 분할한 도체마다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반출해야 합니다.
- ④ 소가 도축된 이후에 소의 귀표를 전부 수거하여 파쇄 또는 세절해야 합니다.
 - ▶ 수거된 귀표가 다시 부착되어 유통되지 않도록 수거 즉시 파쇄 또는 세절해야 합니다.

4 포장처리단계에서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① 포장처리하는 모든 부분육 또는 포장육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해야 합니다.
 - ▶ 발골 정형한 쇠고기는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발골·정형하고, 포장처리한 후에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.
- ②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를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관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이 가능합니다.
 - ▶ 묶음번호 표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서식에 기록보관하고, 해당 쇠고기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.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.
예시) 2009년 6월22일 첫 번째 묶음인 경우, LOT 090622 001
- ③ 포장처리쇠고기의 거래실적을 전산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기록, 보관해야 합니다.

- ▶ 지정업체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)는 포장처리 후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전산신고하고 판매반출실적은 자체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.
- ▶ 일반업체는 포장처리 후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쇠고기 포장처리실적과 판매반출실적을 자체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.
- ④ 구매자가 요구 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.
 - ▶ 구매자(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 등)가 요구 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또는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.

5] 판매단계에서 이력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①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포장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해야 합니다.
 - ▶ 판매장에 입고된 지육 또는 부분육은 개체별로 섞이지 않도록 정형한 후 해당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후 판매해야 합니다.
- ②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에 개체식별번호를 함께 기록, 보관해야 합니다.
 - ▶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보관(1년)해야 합니다.
- ③ 여러 개의 개체를 한 개로 포장한 경우 묶음번호 관리요령에 따라 하나의 묶음단위 포장이 가능합니다.
 - ▶ 묶음번호 표시는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사식에 기록보관하고, 해당 쇠고기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 대신 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. 묶음번호는 LOT를 포함한 연월일과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6] 사후관리, 제도문의, 이력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?

- ① 개체식별번호 표시사항의 적정여부의 확인은 DNA동일성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 - ▶ 사육단계와 포장처리단계는 시·도에서, 판매단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,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DNA동일성여부를 판정합니다.
- ② 이력관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력지원실(1577-2633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▶ 이력추적시스템 이용방법,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등에 대한 문의사항, 소 개체식별정보 수정, 변경 요청 등에 대한 업무처리 등은 이력지원실에서 지원합니다.
- ③ 소비자가 쇠고기의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 - ▶ 구입된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휴대전화(6626+인터넷키) 또는 인터넷(www.mtrace.go.kr)에 입력하면 소의 종류, 등급, 소의 소유자 등의 이력정보가 공개됩니다.